

신길온천지구개발촉구건의안

의 안 번 호	513
------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5. 30.
발의자 : 홍장표의원 외 32인

1. 주 문

안산시 시화지구내 일원의 온천 발견지역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온천지역으로 개발할 것을 강력히 촉구건의함.

2. 제안이유

- 안산시 시화지구내 일원의 온천은 지난 '92년 11월 24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온천수로서 타당성과 적합성을 인정받았음.
-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자치재정의 확보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전제라 할 수 있으므로, 자주재정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 무엇보다도 필요함.
- 따라서 서해안 거점도시이며, 전원 공업도시인 안산시가 관광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온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우선적 과제일것임.

- 그러므로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된 안산시 시화지구 일원의 온천 발견지역을 개발하여 시의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반월공단, 시화공단의 활성화 및 50만 안산시민과 근로자를 위한 휴양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지역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온천지역으로 개발할것을 강력히 촉구함.